

【붙임 4】

▣ 아동영향평가 사전·사후 점검표(담당부서용)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매년 단위(세부)사업 용

※관리번호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수립일정 (예정포함)	관계부서 협 의	대상부서	20 . . .부터 20 . . .까지(○일간)
	협 의	협 의기간	
	확정일정	2015. 1. 1. ~ (계속사업)	
시행일정	2015. 1. 1. ~ (계속사업)		
첨부자료	필수자료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검토결과」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단위사업명	- 제출예산서에 나온 단위사업명을 적습니다.
세부사업명	- 제출예산서에 나온 세부사업명을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아동영향평가가 이루어지나, 담당부서에서 평가하기에 하나로 평가해야 할 단위사업을 세분화해 놓은 것이라면 단위사업을 기반으로 평가도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 세부사업이 근거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적습니다. 법률,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면 해당 되는 조항을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계획이나 구청장 방침 등 다른 근거가 있다면 이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수립일정	- 사업 이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관계부서와 협의기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계획의 확정 일정을 적으시고, 해당 사업이 시작되는 일정까지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첨부자료	- 단위(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해주시면 되며, 필요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기타 자료항'에 자료명을 기록하고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동영향평가 연례점검표(1)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시고, 해당 근거를 기록해주세요.

구 분	질 문	응 답	근 거
아동의 제반 권리와 관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보호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발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아동 참여권 보장을 고려하였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무차별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대상 아동		
제외 아동			
아동 최선의 이익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오			
당사자 의견	해당 단위(세부)사업 기획 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① 예(당사자)	

수렴	수렴하였는가? (예: 설문, 인터뷰, 간담회)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해당 단위(세부)사업에서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설문, 인터뷰, 간담회)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홍보	해당 단위(세부)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익숙한 표현과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당사자)		
		② 예(이해당사자)		
		③ 아니오		
타법규, 조례와 의 관계	앞의 점검표 질문을 토대로 검토할 때,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UN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여타의 어린이/청소년법규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해당 단위(세부)사업이 여타의 법규, 타조례와의 갈등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사후 평가 필요성	해당 단위(세부)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후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가?	① 예		
		② 아니오		
개선 방안	아동권리침해방지와 권리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으시오.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아동의 제반 권리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단위(세부)사업을 고려할 때 어떠한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였는지 표시하면 됩니다. ⇒ 붙임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친화예산 대상사업 목록의 분류 참고 - 근거란에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관련 실적, 평가결과 등을 수치화하여 정리하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 붙임1 목록에 있는 권리 외 다른 아동권리 보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같이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무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단위(세부)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정한 유형의 아동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를 적게 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에서 차별을 받는 아동이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대상아동에는 실제로 참여하거나 혜택을 얻게 될 아동이 어떠한 자격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적으시면 됩니다. 성북구 아동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 주된 지역(예: 월곡동 청소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제외 아동은 명목상으로는 해당 사업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비스에 접근기회가 없는 아동을 적으시면 됩니다. - 사업이 특정 계층의 아동(저소득, 장애인, 소득기준 200% 이하 등)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상 규정, 예산상 제약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실질적 기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차별과 배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대상이 초등학생~중학생까지로 한정되었다고 하여 고등학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초등학교, 특정 중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신청 학교에 친환경 유기농 쌀을 제공한다고 할 때, 관내 학교에 신청 기회를 모두 공정하게 주었다면 이것도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고려를 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예를 들어 공공 안전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려고 할 때 학교 주변 스쿨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어린이/청소년 시설을 운영을 결정할 때 어린이/청소년이 방과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면 ‘예’에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기획할 때와 시행할 때 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 기획 당시에 아동/이해관계자의 욕구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설문,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동의 욕구를 직접 들었다면 ‘① 예(당사자)’에 표시하면 되고, 부모나 보육교사, 교사 등의 욕구를 고려하였다면 ‘② 예(이해당사자)’에 표시하면 됩니다. <u>그 밖의 경우라면 ‘③ 아니오’에 표시하면 됩니다.</u> ‘근거’란에 어떠한 의견이 참조되었는지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동,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설문의 통계처리를 통해서 제시되면 좋겠으나, 민원이나 관련 의견을 들었을 때 수시로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정리해서 제시해도 됩니다. 담당자가 생각하는 ‘필요’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에는 항상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시에는 아동/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부적 계획을 마련 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위사업계획에 담겨 있지 못한 경우는 별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①~②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홍보계획을 적거나, 기록되지 않았다면 계획을 적습니다. -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홍보의 기본 원칙은 익숙한 방식과 익숙한 표현입니다. 아동과 이해당사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익숙한 표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구청홈페이지에 명목상으로만 홍보한다면 대다수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를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표현을 ‘어른의 표현’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의 표현’으로 전환시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FGI를 했을 때 학교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제안되었습니다.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여부는 대개 서식의 앞부분을 작성하면서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식 작성 시 ‘아니오’라고 체크한 부분이 없다면 ‘① 예’에 응답하시면 됩니다. - 여타의 법률과 조례와의 갈등 우려가 있다면 미리 조정을 해보시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과 조례명과 그 이유를 비교란에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에서 1989년 11월 20일 채택. 아동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시 * 당사자 : 아동 본인, 이해당사자 : 아동을 제외한 주변(가족, 주민 등)
사후평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사후평가는 소관부서자체사후평가, 아동 및 청소년대상의 평가조사,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 '아동권리지킴이'의 점검, 외부사후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사후평가필요성에 대한 응답과는 별도로 사후아동영향평가 진행 여부는 ‘아동영향평가부서’ 혹은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표를 작성하면서 아동권리침해방지와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선방안을 약속합니다. 아동영향 사후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에 해당 개선방안의 이행 정도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정리하시면 됩니다.

※ 관리번호 -	아동영향(장기계획,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점검표
사업명(계획명)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아동영향평가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아동영향평가점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동권리 협약,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어린이/청소년과 관련있는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우려를 확인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어린이/청소년과 관련있는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우려에 대해 조치를 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필요 없음 <input type="checkbox"/>
아동권리 고려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참여	8. 해당업무 담당자는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해당업무 담당자는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해당업무 담당자는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11. 해당 사업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사업이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권리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부서점검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자체 점검표와 근거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였는지를 제출부서에서 확인합니다. - 점검표 작성시 누락여부가 있는지, 해당 근거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 비교란에 정리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해당 항목과 부합된 내용인지를 점검합니다. - 부서 자체점검표 작성이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제출처에 재작성을 요구합니다.
아동권리협약,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자체 점검표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에서 ‘㉔ 아니오’라 응답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㉓ 예’라고 응답한 경우라도 어떠한 법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장기 계획의 목적과 내용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검토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이 특정 계층의 아동(저소득, 장애인, 소득기준 200% 이하 등)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상 규정, 예산상 제약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실질적 기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차별과 배제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서에서 검토한 사업, 장기 계획의 대상이 아동을 포함한 경우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당사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참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기획 시 아동의 의견 수렴, 실행 시 아동의 의견 수렴 계획,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함께 고려합니다. - 아동이 아닌 부모나 보육교사, 교사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㉔ 아니오’에 표시하면 됩니다. 물론 아동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특히 영유아), 아동을 대신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당한 효과인가, 약간의 효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다소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미 발생하지 않은 사안(사업계획, 장기 계획)을 두고 이러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요한 대상으로 진행하며 소관부서자체평가표에서 작성한 사항이 정확하고 근거도 분명하다면, 아동의 주요한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p>볼 수 있으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도 대상의 일부로 포함되지만 주요한 대상이 아니거나 소관부서 자체평가표에서 작성한 사항에서 특정한 조치들이 부족할 경우(예: 배제되는 아동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아니거나, 아동/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기제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사업계획, 장기계획에서 특정 대상에 속하는 아동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인을 주어 정신적 차별을 주게 될 경우에는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영향(장기계획, **세출예산** 단위 · **세부사업**) 점검표

(2016. . .)

단위사업(세부사업)명	
검 토 항 목	
<p>1. 해당 세출 예산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이 복수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부사업) 혹은 장기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필요시 별지 사용)</p> <p>-</p> <p>-</p>	
<p>2. 해당 세출 예산 단위사업, 장기 계획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담당부서에서 아동의 권리 침해 방지 및 권리 증진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 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 요청 (필요시 별지 사용)</p>	
<p>3. 해당 세출 예산 단위사업, 장기 계획에 대해 심층(사전)아동영향평가가 요구되는가?</p> <p><input type="checkbox"/>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없음</p> <p><input type="checkbox"/>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1 아동참여기구*의 검토</p> <p><input type="checkbox"/> 2 전문가에 의한 자문</p>	
<p>4. 해당 세출 예산 단위사업, 장기 계획에 대하여 사후영향평가가 요구되는가?</p> <p><input type="checkbox"/> 사후영향평가 필요없음</p> <p><input type="checkbox"/> 사후영향평가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1 업무이행에 대한 '부서자체 사후평가',</p> <p><input type="checkbox"/> 2 아동대상의 평가 조사</p> <p><input type="checkbox"/> 3 사업이행 과정에 대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p> <p><input type="checkbox"/> 4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평가를 위한 '아동참여기구*의 사후검토',</p> <p><input type="checkbox"/> 5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p>	

*아동참여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어린이의회 등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p>권리침해가능성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향 (장기계획, 세출예산 단위·세부사업) 점검표를 토대로 아동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안합니다.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특정 대상에 속하는 아동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인을 주어 정신적 차별을 주게 될 경우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 필요할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권리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 수행을 유보합니다. 행정처리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동영향평가부서는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 청소년)'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속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 필요시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 전문가의 자문 (특히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 권리침해가능성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p>별도의 요청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나, 권리증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된 시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 필요할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권리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 수행을 유보합니다. - 필요시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 전문가의 자문 (특히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 권리침해를 줄이거나 권리증진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게 됩니다.
<p>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여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사업, 장기 계획과 소관부서자체평가서만으로 해당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나 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는 어른들의 시각만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전문가에 의한 자문'은 우선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혹은 동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의 심층 검토 및 자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사업이나 계획의 추진의 결과가 모호한 경우, 혹은 특정 아동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지만 대안을 찾기 힘든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해당 사업 및 계획 추진이 중요하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외부용역을 통해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p>사후영향평가 필요여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동영향평가 초기 점검지」로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나. 연간 사업액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된 경우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인 경우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할 때, '가', '다'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혹은 동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에서 판단을 합니다.

- 사후 영향평가 중 사업의 경중, 아동에 대한 영향 정도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하고 아동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자체 사후평가'만을 실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양한 사후평가방식을 단수 혹은 복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영향평가에서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린이친화도시위원회 혹은 동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를 활용합니다.
- 아동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합니다.
-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염두하여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동 대상의 평가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업이행과정이 길거나 폭넓게 수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니터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지킴이'의 모니터링'을 활용합니다.

※관리번호 -	아동영향 (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 점검표
조례·규칙명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아동영향평가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아동영향평가점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동권리 협약,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어린이/청소년과 관련있는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우려를 확인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어린이/청소년과 관련있는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우려에 대해 조치를 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아동권리 고려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참여	8. 해당업무 담당자는 조례나 규칙 제정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해당업무 담당자는 조례나 규칙 제정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해당업무 담당자는 조례나 규칙 제정시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11. 해당 조례나 규칙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12. 해당 조례나 규칙이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부서점검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처에서 소관부서자체 점검표와 근거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점검표 작성시 누락여부가 있는지, 해당 근거자료가 첨부이 되어 있는지, 비고란에 정리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해당 항목과 부합된 내용인지를 점검합니다. - 부서 자체점검표 작성이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제출처에 재작성을 요구합니다.
아동권리협약,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자체 점검표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타법규, 조례와의 관계에서 ‘② 아니오’라 응답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①예’라고 응답한 경우라도 어떠한 법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및 규칙의 목적과 내용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검토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이 특정 계층의 아동(저소득, 장애인, 소득기준 200% 이하 등)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서비스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상 규정, 예산상 제약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실질적 기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차별과 배제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서에서 검토한 조례와 규칙의 대상이 아동을 포함한 경우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아동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당사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참여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기획 시 아동의 의견 수렴, 실행 시 아동의 의견 수렴 계획,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인터뷰, 간담회 등의 방안이 검토되었는지 함께 고려합니다. - 아동이 아닌 부모나 보육교사, 교사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② 아니오’에 표시하면 됩니다. 물론 아동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나(특히 영유아), 아동을 대신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당한 효과인가, 약간의 효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다소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어려운

	<p>일입니다. 또한 이미 발생하지 않은 사안(조례나 규칙)을 두고 이러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주요한 대상으로 진행하며 소관부서자체평가표에서 작성한 사항이 정확하고 근거도 분명하다면, 아동의 주요한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도 대상의 일부로 포함되지만 주요한 대상이 아니거나 소관부서자체평가표에서 작성한 사항에서 특정한 조치들이 부족할 경우(예: 배제되는 아동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아니거나, 아동/이해관계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기제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약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일 조례나 규칙에서 특정 대상에 속하는 아동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인을 주어 정신적 차별을 주게 될 경우에는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영향(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검토의견서

(. . .)

조례 및 규칙명	
검 토 항 목	
<p>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특정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권리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필요시 별지사용)</p> <p>-</p> <p>-</p>	
<p>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아동의 권리침해방지 및 권리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p> <p><input type="checkbox"/> 별도 요청사항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시정요청(필요시 별지사용)</p> <p>-</p> <p>-</p>	
<p>3.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사항에 대해 심층(사전)아동영향평가가 요구되는가?</p> <p><input type="checkbox"/>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없음</p> <p><input type="checkbox"/>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1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p> <p><input type="checkbox"/> 2 전문가에 의한 자문</p>	
<p>4.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사항에 대해 사후아동영향평가가 요구되는가?</p> <p><input type="checkbox"/> 사후영향평가 필요없음</p> <p><input type="checkbox"/> 사후영향평가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1 업무이행에 대한 '소관부서자체 사후평가',</p> <p><input type="checkbox"/> 2 아동대상의 평가 조사</p> <p><input type="checkbox"/> 3 사업이행 과정에 대한 "'아동권리지킴이'의 모니터링',</p> <p><input type="checkbox"/> 4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사후검토',</p> <p><input type="checkbox"/> 5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p>	

■ 작성요령

항목	작성요령
권리침해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향 (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 점검표를 토대로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안합니다.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특정 대상에 속하는 아동을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인을 주어 정신적 차별을 주게 될 경우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 필요할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권리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 수행을 유보합니다. 조례 및 규칙의 경우 입법절차의 까다로움과 아동에게 미치는 행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영향평가부서는 전문가의 자문(특히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조속한 심의를 진행하여 조치를 취한 후에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나, 권리증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한 시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 필요할 경우에 별지를 사용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권리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 수행을 유보합니다. - 필요시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 전문가의 자문(특히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 권리침해를 줄이거나 권리증진 방안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게 됩니다.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향평가부서에서 조례 및 규칙(안)으로 해당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나 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의 검토는 어른들의 시각만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전문가에 의한 자문'은 우선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동위원회 산하 자문기구 혹은 외부용역(자문)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사업이나 계획의 추진의 결과가 모호한 경우, 혹은 특정 아동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이 우려되지만 대안을 찾기 힘든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해당 사업 및 계획 추진이 중요하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후영향평가 필요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한 조례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동영향평가 초기 점검지」로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나. 조례나 규칙의 통과로 시행되게 될 사업의 연간 사업액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장기계획과 연관되어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한 조례인지 여부를 검토할 때, '가', '다'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혹은 동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에서 판단을 합니다. - 사후 영향평가 중 사업의 경중, 아동에 대한 영향 정도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p>중요도가 덜하고 아동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자체 사후평가’만을 실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양한 사후평가방식을 단수 혹은 복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에서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린이친화도시위원회 혹은 동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를 활용합니다. - 조례나 규칙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동대상의 평가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례나 규칙의 영향력이 전면적이거나 장기간 모니터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지킴이’의 모니터링’을 활용합니다. - 아동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동참여기구(권리지킴어린이, 권리지킴청소년)’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합니다.
--	---

